

평가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정비 방안

배현송 사업상임위 전문위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평가제 도입의 이념적 근거
- III. 평가제도의 내용
 - 1. 평가제의 도입배경
 - 2. 평가의 기본원칙
 - 3. 평가체계의 구성
 - 4. 결과의 활용
- IV. 시설 운영개선 실행방안 (개별적 접근)
 - 1. 시설 생활인의 권리 보장
 - 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 3. 시설운영 효율성
 - 4. 시설운영의 개방성·투명성
- V. 교단적 접근 방안
 - 1. 복지담당 부원장 제도
 - 2. 일원화 된 사회복지 체제 정비
- VI. 마무리하는 말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감찰원에서는 원기84년도 복지시설(입소시설) 16개 기관 중에서 14개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중요과제로 15개 조항을 제시했다. 그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시설의 종합평가 대비”이다. 그러나 다른 14개 조항의 문제들도 시설의 종합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해결들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설의 종합평가 문제는 요원한 장래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 두고 연구하고 대비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올해(1999년) 정신요양시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시설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평가제는 어떠한 이념에 의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교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시설 개별적 접근과 교단적 접근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평가제 도입의 이념적 근거

지금은 바야흐로 20C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다각적으로 해야할 때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날로 증가될 추세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확보차원에서 정상화와 탈시설화라는 이념아래 전개되어질 전망이다. 정상화란 전체 사회구성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것이고 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서비스를 주민과 정부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생활자의 재활, 사회복지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탈시설화이다. 이러한 탈시설화는 정상화 원리에 바탕을 둔 이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설생활자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보호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념

으로 등장한 것이다.

탈시설화의 기본목표는 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 보호되어 있는 시설생활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시설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규모가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큰 생활단위에서 작은 생활 단위로, 집단생활에서 개인생활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에서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로, 의존적인 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시설보호의 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시설보호에 관련된 새로운 이념의 대두로 인하여 시설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게 되었고 양지마을 사건 등 일련의 시설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은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통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책무성확보는 결국 수혜자들에게 적정의 서비스를 유지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Ⅲ. 평가제도의 내용

1. 평가제의 도입배경

시설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을 위한 책무성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공공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 상승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가, 인권 혹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달성해야 할 목표수준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8월에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제43조와 1998년 8월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게 되어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평가했고 2000년부터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여성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 평가의 기본원칙

첫째, 평가는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평가를 통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평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기준·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가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적 평가로서 평가과정 속에서 평가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시설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최고의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다섯째, 평가내용상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평가체계의 구성

평가체계의 구축은 시설환경·운영관리·조직 및 인력·서비스의 질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이나 배점 비율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므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는 확정안은 아니다. 기초안이고 다소의 수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시해 보고

자 한다.

▣ 평가체계의 구성 (90문항)

A. 시설환경 (17문항, 30%)

1. 기본시설분야(침실,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 - 7문항
2. 지원시설분야(사무실, 프로그램실) - 3문항
3. 기본환경분야(건물 외부의 운동장, 정원 등) - 3문항
4. 입지환경분야(입지장소의 외부환경) - 2문항
5. 지역사회관계분야 - 2문항

B. 운영관리 (16문항, 20%)

1. 운영주체(법인)의 기여도 - 3문항
2. 목표와 계획 - 2문항
3. 문서와 기록체계 - 2문항
4. 대외적 관계 - 2문항 (추가 예상)
5. 재정적 관리 - 5문항
6. 평가와 환류 - 2문항

C. 인력 (16문항, 10%)

1. 직원 채용 - 4문항
2. 직무 분담 - 2문항
3. 근무 여건 - 5문항
4. 교육 훈련 - 5문항

D. 서비스의 질 (41문항, 40%)

1. 입·퇴소자 절차의 적절성 - 4문항
2. 입소자 기본권 - 10문항
3. 안전 - 5문항
4. 기초생활서비스 - 9문항
5. 전문적 재활서비스 - 10문항
6. 원조적 서비스 - 3문항

※ 전체 점수 가중치(시설의 규모, 동일법인 시설의 밀집 여부,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소재지 행정구역)와 문항간 가중치(장애 영역별로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결정)를 부여한다.

4. 결과의 활용

평가팀은 전문가 1인, 현장 실무자 1인, 관계 공무원 1인의 3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질 것이며 평가의 실시는 전국적 절대평가 또는 시·도별 상대평가방식 중 시설분포현황 및 특성들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평가결과는 서열화하기 보다는 3-4개군(우수, 양호, 노력필요)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일정수준 도달여부만을 체크하는 인정제도로의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A군(전체의 25%정도), B군(전체의 50%정도), C군(전체의 25%정도)등으로 나누어 A군에게는 시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의 지원, 표창 및 민간복지재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거나 감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에 C군은 집중관리의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협회차원의 특별지도 및 간접지원을 통해서 최소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는 그 동안 잘하고 있다고 심증적으로 평가했던 내용을 검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각 시설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주체별로 이어져서 종교단체별 비교 검토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인지도 및 호응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아니어도 필자가 1997년 전국의 190여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시설들을 견학해 본 결과 대부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법인의 풍부한 지원아래 시설환경이나 인적자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았음을 상기해 볼 때 염려되는 바가 많다. 그러므로 원불교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체로 A군에 속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물론 C군에 들어서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로부터 기준이하의 시설로 지도감독을 받게 되면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되고 이는 교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을 감안할 때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A군에 들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만 들이면 인센티브로 부과되는 것들이 훨씬 유의한 것임을 생각할 때 A군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필수적이라 보아지며 이러한 시설의 문제를 이제는 더이상 시설장 개인의 역량이나 희생적 정열에 의존하기에는 급박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원불교 사회복지시설 운영정비 방안에 대해 각 시설에서 개별적 접근을 통한 방법과 교단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V. 시설 운영개선 실행방안 (개별적 접근)

1. 시설 생활인의 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부여되어있다. 비록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불교 교리 표어중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철저한 실천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설 생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 연초부터 시설보호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보건복지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바우처 제도란 시설입소대상자가 여러 생활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한 후 생활해 본 시설 가운데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설보호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맺게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설생활인의 시설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물론 이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 여건 조성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지만 이렇게 바우처제도가 거론될 정도로 시설 생활인에 대한 권리보장의 문제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 의복, 머리모양, 취침들에 대한 선택의 자유보장정도, 시설 내에서의 문화여가 선택권, 입소자에게 사용되는 호칭과 용어의 문제,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개인비품 및 용품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생활상의 선택에 필요한 휴양 및 여가 시설의 구비정도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교단 제 3 대 종합설계안 631조항에서도 시설 사업의 전문화를 정책 입안한 배경에는 ① 복지시설의 발달로 수용·보호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②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③ 정부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 사회에서나 교단적으로 시설보호의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전문성을 띄게 되는가? 당연히 시설보호의 전문성은 시설 생활인의 욕구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의 개설과 사회복귀가 가능한 생활인의 사회적 자활자립을 이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상태가 중증이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 무조건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소장되고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어지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복지계의 일각에서는 음성 꽃동네의 대형화된 시설 및 수용보호의 모습에 지탄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시설 생활인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 사회·심리재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전-사회 통합프로그램, 재활연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접근 방법이 전문성을 고양시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만한 전문적인 시설장 및 직원을 필요로 한다. 시설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다양한 경험체계는 물론이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장을 필요로 하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을 실제적인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복지시설 전무출신 인사가 필요한 요원을 배치하기보다는 인사배치가 여의치 않아 자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배치된다든지,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만 확보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원기 84년 감찰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시설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고, 시설 생활인들의 불만요소가 되어 급기야 사회문제를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전무출신들도 교화·교육·자선의 3대 사업에 안배해서 전문인력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교당 교화위주의 행정 및 교역자의 의식구조 또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교화의 저변확대는 물론 교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잘 운영하는 일도 교화를 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자원봉사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을 지역사회 교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당 교구나 지구와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3. 시설운영의 효율성

시설운영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와 함께 시설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당한 적정인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의 보조금이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 가중치가 붙어 지원되므로 시설규모가 클수록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은 해소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과 함께 맞물려 시설의 대형화가 되어왔다. 그 결과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단순 수용 보호의 차원을 답습하기도 해왔다. 물론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당 평균입소 인원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을 선도해 간다고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균인원이 89명인데 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당 적정 수용인원에 대해 시설장들은 69.3명, 장애인 부모는 20.1명, 전문가는 52.1명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집단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인원 89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시설규모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상화와 탈시설화라는 이념 및 개별화 프로그램 적용상 앞으로 시설규모는 작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이 각 사회복지 시설들은 시설정원의 적정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시설이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문제는 무연고자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고 시설이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곧 해소되어질 것이라는 예측아래 정말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져야 한다.

이때 시설의 선택기준은 반드시 시설생활자의 상태에 따라 자활·자립이 가능한 자와 요양이 필요한 자들 시설 설립의 목적과 운영방침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되어야 하리라 본다.

장애영역이나 서비스의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장애인들을 원불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소를 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시설의 선택에 있어 시설 생활자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가끔은 무자격자를 입소시키거나 정원의 생활자가 생기는 것도 이제는 인정에 끌려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시설의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똑같은 운영경비와 예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설생활자의 만족도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피복비라 할지라도 아무 선택권 없이 똑같은 옷을 구입해서 입게 할 때와 각자의 취향과 체형을 고려하여 본인의 선택에 의해 옷을 구입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만족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설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의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시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유용한가? 라는 문제다 다시 말해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교육의 현장화이다. 시설은 시설을 찾는 자원봉사자나 후원회원은 물론 방문객에게 성실하게 안내하고 적절한 봉사 체험 및 장애 체험들을 통해서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고 건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배점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다.

4. 시설운영의 개방성 · 투명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대체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는 간혹 사건이 터지는 소수의 시설비리를 크게 확산 보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도해 온 매스컴의 영향도 한 몫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앞날을 개척해 주기 위해 不撤晝夜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이나마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아마도 폐쇄적 성향 때문이었을 거라는 자체 반성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과 함께 모든 장비 및 프로그램까지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설생활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친숙해져서 다정한 이웃으로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을 때 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프라이므로 지역내의 여러 기관과 필요하다면 연계프로그램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이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과 지역사회를 서로 잇는 파이프의 역할을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정부의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과 후원자들의 후원금 또는 각종 복지재단의 지원금들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자금 활용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설운영 계획 및 예·결산서 등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투명한 회계관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시설이 개방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더 많은 후원자를 계발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시설은 필수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V. 교단적 접근 방안

1. 복지담당 부원장 제도

교단 3대 사업목표가 교화·교육·자선(필자는 교단적으로 이 자선이라는 말보다 복지하는 말로 쓰여지길 원함)인 만큼 이 삼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성장 발전해야 교단이 지향하는 낙원세계 건설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런데 교단은 현실은 자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지 부분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몇 년간 관계기관이 많이 확충되었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 지도하고 관할하는 행정조직이 미비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부재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는, 혈심 혈성만으로 열심히 하면 적당히 인정도 받고 실적도 올릴 수 있었던 시기는 지나갔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들로 팀워크를 이루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의 명백을 유지하며 터전을 닦아오신 선진님들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간혹 서투른 업무처리로 교단의 이름이 거명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고 「사회복지 평가제」라는 현실 앞에 앞으로 야기될 많은 문제들을 미리 개선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입안들로 신속하게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새천년에 사회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교정원 산하에 교육·교화에 걸맞는 복지 담당 부원장제를 두고 책임있는 인사를 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기울어진 복지분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단 3대 사업목표가 균형있게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일원화 된 사회복지 체제 정비

교단에서 행해지는 사회복지 사업의 접근 방향이나 내용은 다양한 편이다. 우선 원불교 핵심적인 사회복지 법인 삼동회를 비롯하여 6개 법인 산하에 14개 복지관과, 4개의 재가 노인센터, 16개의 복지시설이 있어서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지역 사회 속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는 교단적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예, 사업보고서 내용에 누락)

또한 공익부 산하에는 자선사업회가 있고 새로 지원 법인으로 등록된 원봉공회가 있으며 대외적인 활동은 은혜심기운동본부라는 체계를 통하고 있으며 작년에 가동된 정보지원센터가 있다. 각 교당에는 봉공회가 결성되어있고 이것이 교구별 봉공회로 연합되어 목적사업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조직과 활동들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사회복지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교단 3대 종합설계안에 따르면 611조 공익행정의 개선에 대하여 ①전무출신 요양업무와 자선, 봉공 임무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부를 보강한다. ② 공익부는 법인 사무국관 연계하여 자선 봉공 정책의 개발을 우선한다. ③ 공익부장은 복지법인 상무이사가 되어 복지 법인 사무를 관장해 간다. ④ 봉공회의 조직과

봉공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관리업무는 공익부에서 맡도록 한다. ⑤ 중앙 봉공회(4대 봉공회) 사무국을 공익부에 둔다.

위의 5가지로 정리된 바에 의하면 공익부가 일원화된 사회복지 체계의 정비에 주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자선 사업회, 원봉공회, 정보지원센터 등과 봉공회 관리 업무외에 사회복지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관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부 기구와 역할의 축소로 인해 부딪치는 한계도 있겠지만 삼동회를 비롯한 특정법인과 관련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더구나 **612조 봉공예산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교단 3대 종합 설계안에 따르면 ①의식 헌공금은 교화, 교육, 자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②봉공회 조직을 확대하여 봉공 회비를 정착시켜 나간다. ③각급 봉공회는 장기적인 봉공기금 조성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④봉공회비, 봉공기금은 자선, 봉공사업에 쓰이도록 한다. 또한 **631조 시설 사업의 전문화** 부분에서는 ③법인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각 시설의 연계적 운영을 모색한다. ④자선 사업회를 육성하여 자선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간다고 되어 있다. 이때 자선 봉공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정원에서는 은혜심기 운동본부를 대외적인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특정 법인들 산하에 기관들은 제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6대 특정 법인 산하 시설장들의 협의체인 '원불교 사회복지 협의회'가 교단적으로 단체등록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감안할 때 이 모든 법인과 기관 및 교당등을 통한 모든 사회복지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일원체계의 사회복지 체계가 아쉽다.

VI. 마무리하는 말

원기 84년도 감찰원에서 14개 복지시설 감사를 마치고 각 시설에 보낸 지적사항은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처리의 미숙이나 미비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설평가체계에 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감사가 요청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운영의 기본방침 및 방향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사무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시설들이 나름대로 개별적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치고 전문적 지도가 하나되어 보다 모범적인 시설운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벌려진 회계상의 문제들(예를 들면 법인 부담금)도 교단적인 모든 복지 기금(봉공회비, 자선사업회비, 교단의 복지분담금, 법인자산, 시설근무하는 전무출신 용금차액 등)을 한데 모아서라도 평가를 앞둔 이시기에 청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아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결국 행정기관등 타력에 의해서 조정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된다. 어떤 정책이나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하고 평가해서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준수되도록 일원화된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역동적인 회전이 가능할 때 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이 원불교의 교리이념을 실천하는 보은의 도량이 될 때 교화는 절로 되어질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1. 김통원·최성재·김성이 공저,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2. 전라북도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령집",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1998
3. 김형식,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9
4. 장인협,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5. 김영모, "사회복지학(개정판)",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6. 심대섭, "종교 사회복지사 활동론",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8
7.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1998. 겨울
8. 시설 평가 대응 및 공동모금 재원활용 방안, 전라북도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자료, 1999
9.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공청회 자료 99-13, 보건사회연구원, 1999
10.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시설의 과제와 시설장의 역할, '99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장 연 수회,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복지시설 협의회, 1999
11. 교단3대 종합설계안
12. 원기84년도 복지시설 감사자료, 원불교 감찰원
13. 정신요양시설 평가체계안, 1999